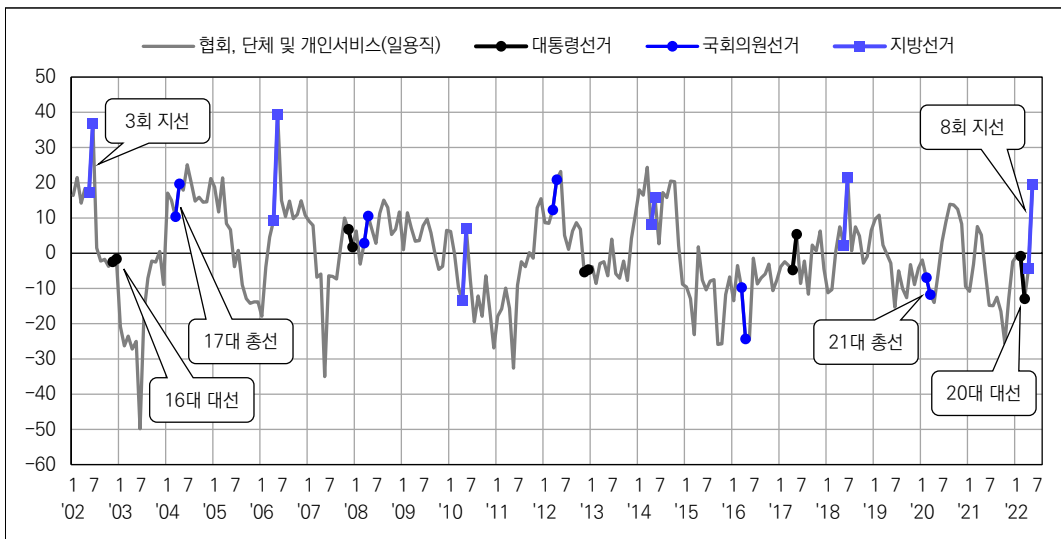


선거와 선거사무관계자 고용

- 2001년 이후 이루어진 16건의 선거(지방 선거 6건, 대통령 선거 5건, 국회의원 선거 5건)에서 선거사무관계자(협회, 단체 및 개인서비스 일용직)로 추정되는 취업자 증가 추세를 살펴본 결과, 주로 지방 선거(이하 지선)에서 1만~3만 명의 선거운동원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 6회 지선(2014년 6월 4일) 시기에 취업자 증가폭이 약 1만 명 확대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2만~3만 명의 취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치러진 8회 지선(2022년 6월 1일)에는 약 2.5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의 경우, 17~19대 총선까지는 약 1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 이후로는 선거기간에 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그림 1] 선거일정과 협회, 단체 및 개인서비스(S) 일용직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주 : 2002~2004년까지는 8차 산업분류, 2005~2013년까지는 9차 산업분류, 2014년부터 10차 산업분류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의 경우, 19대 대선을 제외하고 선거기간에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하게 나타남.

〈표 1〉 2002년 이후 선거 및 선거일자

선거	선거 일자	선거	선거 일자
3회 지방선거	2002년 06월 13일	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12월 19일	6회 지방선거	2014년 06월 04일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04월 1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04월 13일
4회 지방선거	2006년 05월 31일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05월 09일
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19일	7회 지방선거	2018년 06월 13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04월 09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04월 15일
5회 지방선거	2010년 06월 02일	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03월 09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04월 11일	8회 지방선거	2022년 06월 01일

- 선거사무관계자 취업자 증가폭이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선거사무원을 포함한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둘 수 있기 때문임.
 -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 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시·군·구의 수 이내로 둘 수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군·구의 장 선거는 동일한 선거사무원 정원을 가지고 있으나, 지선에서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시·도 및 시·군·구의원 선거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선거사무원 정원을 둘 수 있음.

〈표 2〉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 정원
대선	대통령 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수 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시·군·구의 수 이내
지선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 시·군·구의 장선거	시·군·구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5명은 선거사무소 배치).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
지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안의 시·군·구의 수 이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안의 시·군·구의 수 이내
	지역구자치 시·군·구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비례대표자치 시·군·구의원 선거	자치 시·군·구 안의 읍·면·동의 수 이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별고용조사가 매년 4월(상반기), 10월(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소분류(949.기타 협회 및 단체)로 업종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4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20대, 21대 총선) 당시의 취업자 수와 근로시간, 소득을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음.
 - 선거가 없던 10월에 비해서 총선이 실시된 4월에는 약 5천 명의 취업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대 총선에서는 주당 26시간을 일해서 65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21대 총선에서는 주당 23.4시간을 일해서 81.4만 원의 임금을 받았음. 선거가 없던 10월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약 10시간 높아졌으나 월 임금소득의 증가는 20만 원 내외에 불과함.
 - 20대 대선(2022년 3월)까지 선거운동원의 일당은 최대 7만 원 수준(교통비 및 식대 포함)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 현행 최저임금(9,16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음. 그러나 노동판례상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¹⁾.
 -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8회 지방선거(2022년 6월)부터 최대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표 3〉 국회의원 선거일정과 949.기타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일용직 취업자 및 근로시간, 임금수준

	취업자 수 (천 명)	주당 실제근로시간 (시간/주)	월 평균 임금 (만 원/월)
2016년 4월 (상반기, 20대 총선)	7.0(7.7)	26.0(27.8)	64.7(78.0)
2016년 10월 (하반기)	2.4(2.5)	16.1(16.3)	42.0(42.2)
2020년 4월 (상반기, 21대 총선)	6.4(6.8)	23.4(23.5)	81.4(81.3)
2020년 10월 (하반기)	1.1(1.9)	12.7(18.6)	59.6(57.8)

주 : 1) 괄호는 중분류 산업(94. 협회 및 단체)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함.

2) 협회 및 단체의 일용직 취업자에 해당하는 표본이 많지 않은 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6, 2020년.

-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정보를 회계보고 마감 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시점(2022년 8월 1일 기준)에서 8회 지방선거 선거구별 후보자의 선거사무관리자수당²⁾ 지급 현황을 지급 건별로 열람할 수 있음. 열람자료를 종합한 결과³⁾, 세종특별자치

1)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추가수당을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동리뷰』 2020년 3월호 노동판례리뷰,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참고하기 바람.

2) 각 정당에서는 분기/연도마다 정당의 수입·지출총괄표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보고하고 있는데, 선거사

시의 경우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은 총 지출액 대비 28~29%, 시의원 및 광역의원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사무자 수당은 지출액 대비 35~39%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선거사무관리자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3일(5월 19~31일)에 해당하는 수당(13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선거연락소장, 사무장, 회계책임자는 약 18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음.
- 20대 대선 이후 선거사무관계자가 낙선 인사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 선거사무관리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2022년 4월 개정, 일명 박옥화법)되면서, 모든 후보자의 지출내역에 고용, 산재보험료 납입기록이 나타나고 있음.

〈표 4〉 세종특별자치시 8회 지방선거의 선거구별/후보자별 평균지출액, 선거사무관계자수당

(단위 : 천 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A)	평균 지출액 (B)	평균 선거사무관계자수당 (C)	평균 지급건수	비율 (C) / (B) %
시·도지사 (후보 2명 평균)	371,504	333,439	94,289	78.0건	28.3%
시의원 (18선거구 평균)	50,082	36,779	12,959	11.4건	35.2%
광역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평균)	71,812	53,922	21,120	23.0건	39.2%
교육감 (후보 6명 평균)	371,504	314,428	91,753	95.8건	29.2%

주 : 1) 선거비용 공개자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동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

2) 지출내역이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쳤으며,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게 제공된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고, 유세차 및 래핑 등의 인건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식대 등은 제외하였음.

3) 선거별 회계보고 기간에 따라 지출액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3~4월부터, 시의원선거의 경우 5월 선거운동일부, 교육감선거의 경우 2월부터 지급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공개(2022년 8월 1일 기준 열람 가능), 저자작성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 18개 선거구의 2개 정당 후보자(36명)의 선거비용 지출액과 선거사무관계자수당 분포를 살펴보면, 선거비용 지출액을 최대한 늘리더라도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지역구 시의원은 선거사무소에 최대 10명의 선거사무관계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선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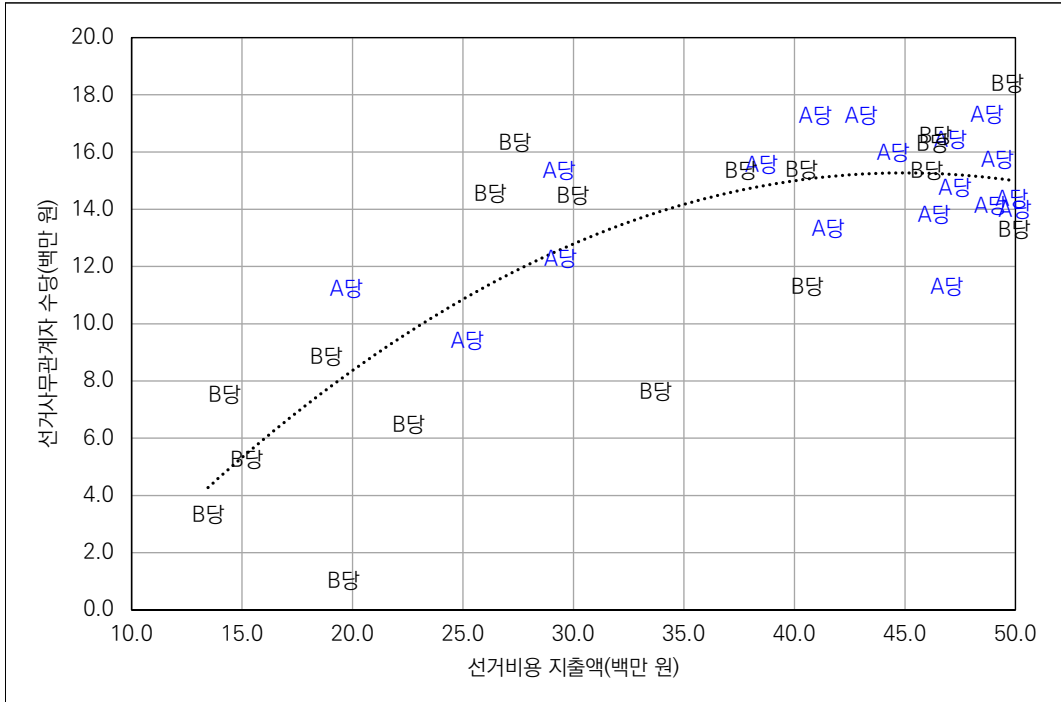
무관계자 수당은 지출항목의 인건비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보조금(선거비용)으로 분류되고 있음.

3)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만 공개하고 있으며, 열람 외에 자료 복사 및 인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열람자료의 지급내역, 액수를 눈으로 확인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음.

무관계자 수당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액이 낮는데, 향후 선거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SNS를 활용한 선거유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사무관계자의 고용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세종특별자치시 18개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36명)의 선거비용 지출액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주 : 1) 선거비용 공개자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동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

2) 지출내역이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쳤으며,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게 제공된 금액만을 포함하고 있고, 유세차 및 래핑 등의 인건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식대 등은 제외하였음.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공개(2022년 8월 1일 기준 열람 가능), 저자작성자료.

(임용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